< 개정 2021/10/15 >

정 관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한국의 국제적 발전과 위상제고를 추구하며 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젊은 인재들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이하 "법인"이라 함)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 2008.3.17)

1.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함)
2. 티엘비유글로벌학교(이하"대안학교"라 함)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00번지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2.7.25)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 2 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9 조의 2 (예산·결산의 공개)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 2006.2.13)

제 10 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회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삭제 : 2006.10.11)

제 14 조 (삭제 : 2006.10.11)

제 15 조 (삭제 : 2006.10.11)

제 16 조 (삭제 : 2006.10.11)

제 17 조 (삭제 : 2006.10.11)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개정 : 2012.7.25)
2. 감사 2인

제 19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년

2. 감사 2 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 2006. 10.11)

② (삭제 : 2012.7.25)

③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장으로 선임된 자는 대학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당연직 이사로 재임한다. (개정 : 2008.3.17)

제 20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 2006.10.11)

② (삭제 : 2006.2.13)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신설 : 2006.10.11)

제 20 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 2008.3.17)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는 대학의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신설 : 2008.3.17)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 2008.3.17)

제 20 조의 6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한다. (신설 : 2008.3.17)

1. 대학평의원회 추천 위원 2인

2.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위원 1인

3. 학교법인 추천 위원 2인

②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 2008.3.17)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 2008.3.17)

제 21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 2006.10.11)

③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 2006.10.11)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 2006.10.11)

⑤ (삭제 : 2012.7.25)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이상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개정 : 2012.7.25)

⑦ 제 6 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 2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2008.3.17)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 2006.10.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 22 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 2006.2.13)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 제 : 2008.3.17)

제 22 조의2(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회에서는 2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 2007.3.5)

제 2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 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 2008.3.17)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획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 2006.10.11)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 2006.10.11)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

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 2012.7.25)

제 29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 2006.10.11)

제 30 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2008.3.1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등을 의결하여야한다. (개정 : 2008.3.17)

제 31 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 2006.10.11)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신설 : 2006.10.11)

제 31 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제 31 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학생·동문의 각 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3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1 조의 4 (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사람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사람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사람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장단에서 추천한사람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 31 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31 조의 6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1 조의 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2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5 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 2008.3.17)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 2008.3.17)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 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학교운영의원회

제 31 조의 9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안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 2008.3.17)

제 31 조의 10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 2008.3.17)

1. 교원위원 4인
2. 학부모위원 4인
3. 지역위원 3인

② 대안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신설 : 2008.3.17)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택하되, 대안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 2008.3.17)

④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 2008.3.17)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 2008.3.17)

제 31 조의 11 (학교운영위원회 의장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신설 : 2008.3.17)

② 의장과 부의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신설 : 2008.3.17)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신설 : 2008.3.17)

제 31 조의 12 (학교운영위원) ①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 2008.3.17)

②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 학년도 4월 1일로 한다. (신설 : 2008.3.17)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 2008.3.17)

④ 교원위원은 현재 대안학교 재임 중인 자로, 학부모위원은 현재 대안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신설 : 2008.3.17)

제 31 조의 1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 2008.3.17)

1.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2.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국제연수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대안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장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 31 조의 14 (운영규정) 대안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08.3.17)

제 4 장 수익사업

제 32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개정:2005.02.25)

제 5 장 해 산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 2008.3.17)

제 34 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학교법인의 취지와 동일한 학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개정 : 2008.3.17)

제 35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2008.3.17)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6 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장은 중임할수 있고, 티엘비유글로벌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 2008.3.17)

② 제 1 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시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 2012.5.17)
2. 급여 : 정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시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근무기간은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부교수 : 정년
2. 조교수 : 4년

3. 삭제 (개정 : 2012.5.17)

④ 교원의 정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⑤ 처장 등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이 보한다.

⑥ 제 1 항 및 제 2 항 이외의 교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⑦ 조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⑧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 2006.10.11)

② 제 1 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 내지 제 17 조를 준용한다. (신설 : 2006.10.11)

제 36 조의 3 (기간제 교원) ① 임용권자는 대안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 2008.3.17)

1. 교원이 정관 제 37 조의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 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4. 특기 적성 교과를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 2008.3.17)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 2008.3.17)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 2008.3.17)

제 2 관 신분보장

제 37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②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③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④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⑥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⑦ 자녀(휴직신청당시 6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 2008.3.17)

⑧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 2008.3.17)

⑨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 2006.10.11)

⑩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 5 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 2006.10.11)

제 38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제 37 조 제 1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 2006.10.11)

② 제 37 조 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 37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 37 조 제 5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2006.10.11)

⑤ 제 37 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⑥ 제 37 조 제 7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2006.10.11)

⑦ 제 37 조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 2006.10.11)

⑧ 제 37 조 제 9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

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 2006.10.11)

⑨ 제 37 조 제 10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 2006.10.11)

제 39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 37 조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0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 37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 2008.3.17)

② 제 37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와 제 6 호 내지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06.10.11)

③ 제 37 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는 따로 정한다.

제 41 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 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

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 항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2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4 조 (명예퇴직 수당)

① 교직원으로서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45 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6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안학교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 2008.3.17)

제 47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 2012. 5.17)

2. 대학의 장이 처장, 과장 등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 그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각급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 2008.3.17)

② 인사위원회가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 제 1 항 이외의 각급 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 2008.3.17)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8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9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50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 2008.3.17)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1 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 52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3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4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5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6 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57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가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8 조 (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9 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60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 61 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 2 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2 조 (징계 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3 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4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5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 66 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및 시설관리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 67 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68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

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9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70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71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72 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국에는 총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 73 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4 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총무처, 학생처, 기획실을 둔다.

② 각 처 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③ 각 처 및 실의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5 조 (부속기관)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3 절 대안학교 (신설:2008.3.17)

제 76 조 (교장등) ① 대안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신설 : 2008.3.17)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신설 : 2008.3.17)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 2008.3.17)

제 77 조 (하부조직)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 2021.10.15)

제 4 절 정 원 (개정 : 2008.3.17)

제 78 조 (정 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개정 : 2008.3.17)

제 8 장 보 칙

제 79 조 (공 고)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제 80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81 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당초의 임원 명부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주 소
1	이 사 장	유 병 화	451211-1235317	1998.10.14-2000.10.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62-29
2	이 사	박 재 섭	160413-1030119	1998.10.14-2002.10.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 APT 1동 704호
3	〃	이 완 희	300201-1041728	1998.10.14-2002.10.1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APT 12동 602호
4	〃	김 찬 규	320401-1009318	1998.10.14-2002.10.13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APT 5동 805호
5	〃	박 노 형	581229-1023223	1998.10.14-2000.10.1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73동 606호
6	〃	박 기 갑	570725-1000427	1998.10.14-2002.3.31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왕궁APT 1동 302호
7	〃	김 용 철	590330-1094921	1998.10.14-2000.10.13	서울시 관악구 봉천3동 1000 관악현대APT 113동 1502호
8	〃	황 성 용	630408-1226131	1998.10.14-2000.10.13	서울시 광진구 능동 239-2 301호
9	감 사	최 지 광	650825-1535816	1998.10.14-2000.10.13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 637 주공 APT 1303동 801호
10	〃	임 인 수	661123-1109715	1998.10.14-1999.10.13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12-2번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6 명
일 반 직 계	1 명
4 급(참 사)	1 명
8 급(서 기)	1 명
기 능 직 계	4 명
7 급(기능부주사)	1 명
8 급(기능원)	3 명

(별표 2)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42 명
일 반 직 계	32 명
2급(참 여)	1 명
3급(부참여)	1 명
4급(참 사)	2 명
5급(부참사)	4 명
6급(주 사)	4 명
7급(부주사)	8 명
8급(서 기)	12 명
고 용 직 계	10 명
고용직	10 명

(별표 3)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4 명
일 반 직 계	10 명
2급(참 여)	1 명
4급(참 사)	1 명
6급(주 사)	2 명
7급(부주사)	2 명
8급(서 기)	4 명
기 능 직 계	4 명
8 급(기능원)	2 명
고용직	2 명